

2018년 4분기 희망퇴직 시행 FAQ

Q1. 희망퇴직제도가 '14년 특별 명예퇴직과 다른 점은?

- A1.
- 희망퇴직제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해 '17년 조합의 "희망퇴직 도입" 요구를 '18년 단체협약 시 회사가 수용한 것으로,
 - 기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명예퇴직 등과 성격이 다르며, 직원 희망에 의해 정기단위로 퇴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목적임
-

Q2.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?

- A2.
-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, 정년퇴직, 계약만료,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함.
 - 금번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명예퇴직 등과는 성격이 다르며, 희망자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님
-

Q3.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의 기준은 무엇인가?

- A3.
- 신체정신상 장애는 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 - 산재승인 인력이 있거나,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직원 중 업무수행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원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기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병원급 진단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.
- 다만, 신청서에 '신청사유'를 기재해야 하며,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.
-

Q4. 금년에는 임금피크제 도래예정 대상자가 왜 없는지?

- A4.
- 2018년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될 예정임. 이에 따라 기존 2019년 1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들은 임금피크제 진입이 1년 뒤로 미뤄질 예정
- 예) 1962년 12월생의 경우, 2019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변경으로 2020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
즉, 1962년 12월생은 2019년(내년) 4분기 희망퇴직 시행 시 신청 가능
-